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 근거 마련〉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21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창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4. 9.
- (3) 회 부 일 : 2026.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를 추가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u>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 킨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 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 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u>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②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32조 내용>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런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정보의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같은 조치는 취해지기 어려움.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의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¹⁾과 같이 「전자상거래법」

1) 함께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220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위반행위의 반복,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행위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하게 되는 것임.

- 또한, 현행법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반복 위반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다른 기관의 요청을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영업정지 체계와의 정합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안 제64조제5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영업정지 필요성과 비례성을

현행	개정안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2.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 부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²⁾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법에서도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대상이 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³⁾⁴⁾

○ 셋째, 개정안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정지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소비자 정보 침해 시 사업자가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3)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관련 업계(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 체계로 규율 가능한 사안이므로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는 일차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문제로, 다른 기관에 요청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정지·제한 등 직접적 수단 강화가 입법 취지, 집행의 실효성, 예방 효과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고, 타 기관 제재와 병과 시 이중 제재 또는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